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21. 3. 15.(월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검 토 보 고 서

## 1. 발 의 자: 김국기 의원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1년 3월 3일
- 회부일자: 2021년 3월 5일

## 3. 제안이유

- 어린이에게 놀이는 생활이자 배움의 과정으로 행복감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소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놀이시간이 부족한 상태임. 이에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여 어린이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4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교육감 등의 책무(안 제3조)
- 지원계획의 수립 등(안 제4조)
- 실태조사(안 제5조)
- 위원회 설치, 구성, 회의 운영(안 제6조~제8조)
- 학교의 지원(안 제9조)
- 교사 연수(안 제10조)
- 협력체계 구축(안 제11조)
- 시행규칙(안 제12조)

## 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,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 및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 조례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, 정의,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면서, 학교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자체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5조에서는 교육감이 어린이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안 제6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두면서, 안 제7조와 8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였음.
-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는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놀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실시하는 각종 지원 사업과 교사연수,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였음.
-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, (가칭)중북부교육시설복합센터내에 놀이공간을 설치하고, 유치원 및 초등학생 대상 놀이교육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및 주요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